

# 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626호 2024. 3. 11.(월)

## 입 법 예 고

고성군 공고 제2024-454호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 
예고 ..... 2

고성군 공고 제2024-465호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조례 시행규칙  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..... 13

## 고 시

고성군 고시 제2024-37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..... 29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고성군 공고 제2024-454호

**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「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3. 11.

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헬스장(체력단련장)이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헬스장을 이용료 부과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헬스장이 수영장의 부속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에서 “헬스장” 용어 삭제(안 제4조·제19조·제23조)

나. 헬스장 요금표 삭제(별표 3)

다. 서식 개정(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스포츠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2) 성명(법인 및 기관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: 스포츠산업과 체육시설담당

1) 주소: (52931)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193, 고성군청 스포츠산업과

2) 전화: (055)670-5844, 팩스: (055)670-4709

다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 등

붙임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고성군 조례 제 호

**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스쿼시장, 헬스장” 을 “스쿼시장” 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스쿼시장, 헬스장” 을 “스쿼시장” 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스쿼시, 헬스회원” 을 “스쿼시회원” 으로, “수영·스쿼시·헬스” 를 “수영·스쿼시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스쿼시장, 헬스장” 을 “스쿼시장” 으로 한다.

별표 3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운영시설)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생활체육시설 : 수영장, <u>스쿼시</u>장, <u>헬스장</u>, 조깅트랙 등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4조(운영시설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스쿼시</u>장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사용범위) 문화체육센터시설중 생활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 사용범위는 수영장, <u>스쿼시</u>장, <u>헬스장</u>, 조깅트랙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</p>	<p>제19조(사용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스쿼시</u>장----- -----.</p>
<p>제23조(회원가입신청 및 회원증)</p> <p>① 수영, <u>스쿼시</u>, <u>헬스회원</u>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<u>수영·스쿼시·헬스</u>회원가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는 수영장, <u>스쿼시</u>장, <u>헬스장</u>의 이용기간이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정기회원을 모집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회원증을 발행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23조(회원가입신청 및 회원증)</p> <p>① --- <u>스쿼시</u>회원----- ----- ----- <u>수영·스쿼시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스쿼시</u>장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
【별표 3】 <현행>

**헬스이용방법 및 요금(제21조 관련)**

(단위:원)

구분	수 강	자유연습	
	매일반 (월)	매일반 (월)	일일이용
일반인	-	40,000	4,000
청소년	-	30,000	3,000

**수영, 헬스 병행 이용방법 및 요금(제21조 관련)**

(단위:원)

구분	수 강	자유연습	
	매일반 (월)	매일반 (월)	일일이용
일반인	-	70,000	-
청소년	-	60,000	-

【별표 3】 삭제<2000.00.00>





【별지 제15호서식】 <현행>

# 회원 이용기간 연장 신청서

처리기간

즉시

신청인 (본인)	성명	생년월일		성별	
	주소				
가입종목	수영, 스쿼시, 헬스		회원번호		
이용기한(당초)	년 월 일	이용기한(변경)		년 월 일	
연장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 일간)				
연장사유					

위와 같은 사유로 「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제24조 제5호에 따라 (수영, 스쿼시, 헬스)회원 이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본인과의 관계 :

고 성 군 수 귀 하

첨 부 : 회원증 1부

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화번호:
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안	찬반의견		수정안	수정사유
	찬성	반대		

고성군 공고 제2024-465호

**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조례 시행규칙  
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**

「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3. 11.

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국가유산체제 전환으로 상위법인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(2024. 5. 17.)」이 개정됨에 따라, 변경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.

2.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

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제명 변경, 용어 정비,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을 위한 별지 관련 법률 및 용어 정비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관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처: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리담당

- 1) 주소: (52937)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113번길 50, 2층 문화예술과
- 2) 전화: (055)670-2544, 팩스: (055)670-2209

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1)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리담당 [전화: (055)670-2544]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고성군 규칙 제 호

**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**

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조례 시행규칙”을 “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 조례」”를 “「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 조례」”를 “「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 조례」”로, “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”을 “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(중전의 제1항) 중 “중요무형문화재”를 “국가무형유산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</u> <u>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조례</u> <u>시행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고성군</u> <u>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</u> <u>리·운영 조례</u>」의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탁운영신청) 「<u>고성군 중</u> <u>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</u> <u>·운영 조례</u>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중 <u>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</u>(이하 “교육관” 이라 한다)의 관리·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(위탁운영자의 선정) ① 조 례 제2조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 이 있을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 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<u>중요무형문화재 기·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</u> <u>관리·운영조례 시행규칙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고성군</u> <u>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</u> <u>·운영 조례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탁운영신청) 「<u>고성군 국</u> <u>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·</u> <u>운영 조례</u>」----- ----- 국 <u>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위탁운영자의 선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무형유산</u> -----</p>

예능보유자 또는 단체를 군수가  
결정토록 한다.

-----  
-----.

제5조(관리·운영위탁기간의 연  
장신청등) ① (생략)

제5조(관리·운영위탁기간의 연  
장신청등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[별지 제1호서식] (개정 전)

##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.운영 위탁 신청서

신청자	단체(법인) 명칭		대표자 성명	
	주 소 (사무소소재지)		전화번호	

사 용 목 적	
------------	--

수탁운영 기 간	년 월 일부터      년 월 일까지(2년간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.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 
규정에 의거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관리.운영 위탁하고자  
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자 주 소 :

단 체 명 :

대 표 자 :

(인)

고 성 군 수 귀 하

<첨부서류>

1. 사업계획서 1부.
2. 단체(대표자) 주요 경력 1부.

[별지 제1호서식] (개정 후)

##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.운영 위탁 신청서

신청자	단체(법인) 명칭		대표자 성명	
	주 소 (사무소소재지)		전화번호	
사 용 목 적				
수탁운영 기 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2년간)			

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.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관리.운영 위탁하고자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주 소 :

단 체 명 :

대 표 자 :

(인)

고 성 군 수 귀 하

<첨부서류>

1. 사업계획서 1부.
2. 단체(대표자) 주요 경력 1부.

[별지 제2호서식] (개정 전)

##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라운영 위탁계약서

- 명 칭 :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
- 위 치 :
- 부 지 :
- 건 물 :

위 재산의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고성군수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와 ○○○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간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리·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사용목적)

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기·예능의 전수 및 교육·홍보,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, 중요무형문화재의 기·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·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등 민속예술의 개발연구를 도모한다.

### 제2조(계약기간)

200 . . . 부터 200 . . . 까지 (2년간)로 한다.

### 제3조(위탁운영비 보조)

운영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“을”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총당함을 원칙으로 하며, 「문화재보호법」 제36조 및 「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### 제4조(전시물의 관리)

“을”은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(재산관리)

① “을”은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·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을 신·증축, 개·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“갑”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“갑”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.

③ “을”이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,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“갑”에게 기부 채납 하여야 하며,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·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
**제6조(지도 감독)** ① “갑”은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,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“을”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 (계약해지 및 손해배상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“을”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을”이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2. “을”이 수탁목적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“갑”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4.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
5.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
6.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해야 할 때

② “을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.

③ “을”은 “갑”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제8조 (재산의 반환)

본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·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“갑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,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년 월 일

"갑" 고 성 군 수 (인)

"을" (인)

[별지 제2호서식] (개정 후)

##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라운영 위탁계약서

○ 명 칭 :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

○ 위 치 :

○ 부 지 :

○ 건 물 :

위 재산의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고성군수(이하 “위탁자” 라고 한다)와 ○○○(이하 “수탁자” 라고 한다)간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리·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(사용목적)

고성군 국가무형유산 가·예능의 전수 및 교육·홍보,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, 국가무형유산의 가·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·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등 민속예술의 개발연구를 도모한다.

### 제2조(계약기간)

20 . . . 부터 20 . . . 까지 (2년간)로 한다.

### 제3조(위탁운영비 보조)

운영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“수탁자”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,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「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### 제4조(전시물의 관리)

“수탁자”는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 제5조(재산관리) ① “수탁자”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

운영에 대하여 위·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수탁자”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, 시설물을 신·증축, 개·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“위탁자”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“위탁자”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.

③ “수탁자”가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,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“위탁자”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,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·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.

**제6조(지도 감독)** ① “위탁자”는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,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“수탁자”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제7조 (계약해지 및 손해배상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”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수탁자”가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2. “수탁자”가 수탁목적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“위탁자”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4.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
5.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
6.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해야 할 때

② “수탁자”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.

③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 제8조 (재산의 반환)

본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·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“위탁자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

[별지 제4호서식] (개정 전)

###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.운영 위탁 연장신청서

신청자	단체(법인) 명칭		대표자 성명				
	주 소 (사무소소재지)		전화번호				
사 용 목 적							
수탁운영 기 간	당 초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
	연 장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

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.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 
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리.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자 주 소 :

단 체 명 :

대 표 자 :

(인)

고 성 군 수 귀 하

<첨부서류>

1. 사업계획서 1부.
2. 관리.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1부

[별지 제4호서식] (개정 후)

##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.운영 위탁 연장신청서

신청자	단체(법인) 명칭		대표자 성명				
	주 소 (사무소소재지)		전화번호				
사 용 목 적							
수탁운영 기 간	당 초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
	연 장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

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.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.운영 위탁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자 주 소 :

단 체 명 :

대 표 자 :

(인)

고 성 군 수 귀 하

<첨부서류>

1. 사업계획서 1부.
2. 관리.운영 위탁신청 시 첨부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1부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조례 시행  
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- 성명(단체명):
- 주 소:
- 전화번호:
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안	찬반의견		수정안	수정사유
	찬성	반대		

고성군 고시 제2024-39호

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3. 6.

고 성 군 수

○ 도로명주소 부여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	

○ 도로명주소 변경

변경 전 도로명주소	변경 후 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변경사유
(별지참조)			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폐지고시일	폐지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(☎055-670-2696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 부여

연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동해면 외곡리 509	동해면 외곡4길 36-5	2024. 03. 06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동해면 외곡리)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	
2	대가면 연지리 545	대가면 연지4길 147	2024. 03. 06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대가면 연지리)을 이용하는 네번째 도로	
3	고성읍 무량리 288-6	고성읍 덕선로 203-16	2024. 03. 06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고성읍 덕선리)을 이용하여 덕선로로 명명	
4	상리면 고봉리 520-1	상리면 고봉로 13	2024. 03. 06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상리면 고봉리)을 이용하여 고봉로로 명명	

도로명주소 변경

연번	도로명주소(기존)		도로명주소(변경)		변경사유	변경고시일	비고
	도로명	건물번호	도로명	건물번호			
1	성내로112번길	19-15	성내로124번길	6	주출입구에 따른 건물번호 변경	2024. 03. 05.	

도로명주소 폐지

연번	건물등의 관할구역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 효력일자	폐지 사유	비고
1	상리면	상리면 고봉리 13	2024. 03. 06.	건물신축을 위한 건물 멸실	